

Chubb 사이버위험관리보험



Chubb 사이버위험관리보험은 사이버 활동 중 기업의 과실 혹은 제 3자의 사이버공격 (예: 디도스, 해킹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재정적 손실을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으로, 기업이 입은 직접적 재정손실을 담보하는 “First-party loss Coverage”와 기업의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Third-party liability Coverage”로 구성됩니다.

주요 인수 업종

- 제조
- 의료서비스
- 교육
- 도매 및 물류
- 운송
- 전문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등)
- 테크놀로지
- 소매
- 공공기관 및 각종협회

주요 보상하는 손해

- 개인정보 혹은 기업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방어비용 및 *사고대응비용
- 정보통신보안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방어비용 및 *사고대응비용
- 인터넷 상에 배포하는 전자적 미디어의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비방, 표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
- 데이터 유출, 손상, 컴퓨터 시스템 공격 등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협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 홍보, 법률, 위기대응 자문 비용 및 협박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

- 악성소프트웨어, 해킹, 프로그래밍 과오 (Error), 인적 과오(Human Error)의 사유로 인해 손실 및 파괴된 데이터의 복구 비용
- 악성소프트웨어, 해킹, 프로그래밍 과오 (Error), 인적 과오(Human Error)의 사유로 인해 피보험자의 컴퓨터시스템 또는 데이터에 접근이 불가능, 중단 혹은 방해되어 발생한 기업휴지 손실 및 복구비용

* 사고대응 비용

- 외부 포렌식 서비스 비용
- 개인정보 관련 규제에 따라 소비자에게 통지 해야 하는 사유 발생 시의 통지비용 (자발적 통지비용 포함)
- 모니터링 서비스 비용 (동의를 한 개인에 한하여 신용, 신원도용, 소셜미디어 등)
- 피보험회사의 평판을 보호, 복구하는 목적의 홍보, 컨설팅 회사 또는 법무법인 서비스 비용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범죄, 고의적인 사기 또는 고의적인 부정직 행위
- 신체상의 손상 / 재물손해
- 피보험자 상호 간 손해배상청구 (단,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외)
- 보험개시일 이전에 알고 있던 사고
- 자연재해
- 전쟁 및 테러 (단, 사이버 테러 행위에 따른 청구 제외)
- 특허 또는 영업비밀
- 지식재산권 (단, 미디어 배상책임보험 제외)

에이스손해보험

1) 인사 시스템 제공업체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유출사고

- 피보험자 - 인사 시스템 제공업체
- 사고경위 - 인사 시스템 제공업체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 중이던 고객사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사 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판매함
- 보상내용
- 1.1 개인정보 배상책임 조항에 따라 아래의 비용 보상**
-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포렌식 비용
- 피해 고객사 직원들에게 유출소식 통지비용
- 고객사 직원들 개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서비스 비용

[1.1 개인정보 배상책임]

당사는 개인정보에 관한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내에 최초로 제기되었고, 본 보험 약관 제5.7조(통지)에 따라 당사에 고지된 개인정보 침해 청구에 따른 손해와 개인정보 침해 청구에 관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2) 사이버협박으로 인한 기업휴지 발생 사고

- 피보험자 - 법무법인
- 사고경위 - 해커집단이 법무법인의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법무법인 고객의 민감정보를 해킹 후 법무법인으로 전화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박금 지불을 요청
- 보상내용
- 1.1 개인정보배상책임, 1.4 사이버갈취, 1.6 기업휴지 조항에 따라 아래의 비용 보상**
-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포렌식 비용
- 사이버협박 관련 위기대응 자문 비용
- 협박금 지불,
- 피해고객에게 유출 내용 통지비용,
- 복구 비용 그리고 시스템 중단에 따른 기업 휴지비용

[1.1 개인정보 배상책임]

당사는 개인정보에 관한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내에 최초로 제기되었고, 본 보험 약관 제5.7조(통지)에 따라 당사에 고지된 개인정보 침해 청구에 따른 손해와 개인정보 침해 청구에 관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1.4 사이버갈취]

당사는 사이버 갈취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내에 최초로 제기되었고 본 보험 약관 제5.7조(통지)에 따라 당사에 고지된 사이버 갈취 손해 및 사이버 갈취에 관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1.6 기업휴지]

당사는 보험기간 내에 최초로 발생되었고, 본 보험약관 제5.7조(통지)에 따라 당사에 고지된 기업휴지 사고로부터 발생한 기업 휴지 손실 및 복구비용을 보상합니다.

* 보상내용은 보험계약조건, 보험금지급관련 조사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브그룹은 세계 최대의 상장 손해보험사이자 미국 최대 기업보험 전문 보험사입니다. 전세계 54개국에서 재물보험, 특종보험, 개인상해보험, 건강보험, 재보험 및 생명보험을 다양한 기업 및 개인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더라이팅 중심 기업인 처브그룹은 보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원칙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평가 및 관리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처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보험 전문지식과 장인정신으로 처브그룹은 개인, 가족,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 다양한 고객층에게 최상의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처브그룹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광범위한 판매 채널, 탁월한 재무 건전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자랑합니다. 처브그룹은 다국적 기업 및 중소기업 고객을 위한 재물보험, 특종보험, 리스크 관리 서비스, 고객자산보유 고객을 위한 자산보호 목적의 보장성보험, 개인 고객을 위한 생명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주택종합보험 및 특화보험 그리고 단체상해보험, 단체생명보험 및 재보험 상품을 제공합니다.

미화 1,74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미화 380억 달러의 총 수입 보험료를 달성한 처브그룹의 주요 보험 계열사들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사의 기업재무 능력 AA 등급을, AM Best의 A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브그룹의 모기업인 처브리미티드(Chubb Limited)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CB)에 상장되어 있으며, S&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브그룹은 취리히, 뉴욕, 런던, 파리 및 기타 주요 도시에 사업본부가 있으며, 전 세계 30,000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처브그룹 컴퍼니
 03142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7층
 대표번호 +82 2 2127 2400
 대표팩스 +82 2 6913 8460
 www.chubb.com/kr

박주연 부장
 Head of Financial Lines & Environmental Risk
 Property & Casualty Division
 O +82 2 6711 5733
 E jamie.park@chubb.com

장원 과장
 Financial Lines Underwriter
 Property & Casualty Division
 O +82 2 2127 2346
 E won.jang@chubb.com

박윤미 대리
 Financial Lines Underwriter
 Property & Casualty Division
 O +82 2 6711 5757
 E yoonmi.park@chubb.com

알아두실 사항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와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내용(약관)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하실 수 없습니다.

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자는 청약시 약관과 청약서 부분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취소 신청주소 : (031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타워 B동 7층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전화 : 02-2127-2400)
- 가까운 영업점위치 : (031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타워 B동 7층 (고객서비스센터)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전화 : 02-2127-2400)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지급 및 지급제한

보험금의 지급

보험자는 지급보험금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손해를 통지 받고 보상할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항하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저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책임이 확정되지 않거나 피보험자의 관리영역 내에 있는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보험금 지급을 중지합니다.

- 보험자에게 필요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으므로써 피보험자의 보상 청구권에 의문이 있는 경우
-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의 조사 또는 형법에 의한 심문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중인 경우

보험금의 지급 제한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일반 면책사항 (이 일반 면책은 증권의 전 부분에 적용됩니다.),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적 행위나 고의적 태만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지(해약환급금) 안내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 보험기간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 비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해지환급금으로 돌려 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되며,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 고객센터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 전화번호 : 1566-5800(고객서비스센터) 인터넷 주소 : www.chubb.com/kr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www.fss.or.kr/국번없이 1332)/우)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ubb. Insured.™